

제 466-1호

1974.11.11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 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 전화 75-7834
 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 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정 정 3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정 정

시보 제 464 호 (1974.11.1) 에 게재된 공고제 216 호 (관리처분계획인 부천정공달공고) 에 게재착오로 인한 사항을 정정한다.

1974. 11. 2.

서울특별시

해당사항	오	기
p.69 공고제 216 호	환지	관리

시보 제 466 호 (74.11.11) 게재 내용중 규칙제 1405 호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규칙 제 6 조말미에 (21 페이지) 제 7 조 및 부칙이 누락되었기 다음내용을 정정한다.

1974. 11. 11.

서울특별시

제 7 조 (감보율의 계산) ① 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감보율의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전토지의 지목 또는 지반고에 따라 다음을 두고 금지율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 조례제 11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주택을 위한 분양지는 점유면적별로 분류하여 별표제 3 호의 기준에 따라 합필 분양한다.

③ 전항의 경우 협동가구의 전성분

동일 구역내에서 점유면적에 따라 구청장이 의견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. 다만, 동일한 구역내에서 협동가구를 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협동가구에 전성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이전에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